##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53

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성원·이헌승

이인선 • 고동진 • 최은석

조배숙 · 한지아 · 조은희

박충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.

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(안 제70조 및 제72조).

법률 제 호

##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72조제1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7.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0조(벌칙) ① ~ ④ (생 략)	제70조(벌칙) ① ~ ④ (현행과		
	같음)		
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	<u>&lt;삭 제&gt;</u>		
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			
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			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			
<u> 처한다.</u>			
제7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72조(과태료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
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			
과한다.			
1. ~ 3의6. (생 략)	1. ~ 3의6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의7.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		
	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		
	편입한 자		
4. ~ 12. (생 략)	4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